

부대경비 지급기준

<개정 2023.12.1.>

- ①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못한 치료비 및 입원 요양 중에 발생하는 부대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입원 30일까지는 1일당 30,000원, 31일 입원부터는 1일당 10,000원을 지급한다.
- ②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입원일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, 집중치료실 등의 입원기간도 해당된다.

항목	단위	금액(원)	적용기간
부대경비(입원 1일 ~ 30일)	1일당	30,000	2023.12.01.~
부대경비(입원 31일 이후)	1일당	10,000	2023.12.01.~

※ 2023.11.30.까지는 입원 일수 불문하고 1일당 10,000원 지급.

